

K o r e a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o f A g r i c u l t u r e a n d F i s h e r i e 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 입법 배경부터 판례까지 —

법무법인 연 | 변호사 장훈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오늘의 강의 목차

01

입법 배경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가

02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03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

04

처벌과 양벌규정

형사·경제적 제재

05

용어 정리

유사 개념 구분하기

06

판례 분석

실제 사례로 배우는 법 적용

01 왜 우리가 이 법을 배워야 하는가?



농업·축산·식품 가공 현장은
기계설비와 작업자가 함께 일하는 공간입
니다.

미래 현장 관리자·경영자가 될 여러분에게
이 법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입니다.

1

생명의 무게

작업자 한 사람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
습니다.

2

법적 책임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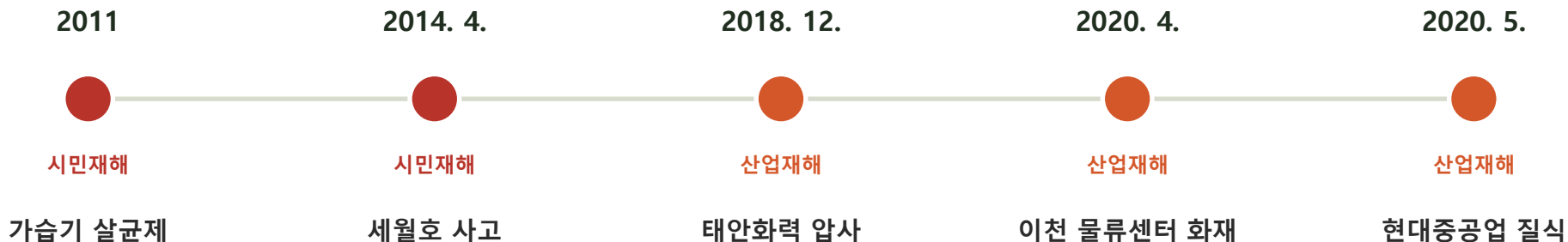
3

미래의 역할

여러분이 곧 농업회사·협동조합·농장의 운영자가
됩니다.

01 입법 배경 — 법을 만들게 된 사건들

산업재해·시민재해로 인한 연이은 참사



→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2021. 1. 26. 제정·공포 → 2022. 1. 27. 시행

02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아래 결과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

- 사망자 1명 이상
-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02 중대산업재해 — 3가지 기준 (법 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가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

나 증상자 발생

**6개월 ↑ 치료 /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다 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02 중대시민재해 — 누가 보호받는가? (법 제2조 제3호)



무엇이 원인이 되는가?

다음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1.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2. 공중이용시설
3. 공중교통수단

예) 식품 제조물 · 농업 시설 · 농산물 유통시설

가

사망자 1명 이상
단 한 명의 사망도 해당

나

2개월 ↑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사고 기준

다

3개월 ↑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 기준

03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 제3조)



핵심 포인트

규모는 작아도 적용됩니다

- ✓ **중소 농업법인도 대상**
5명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 **상시근로자 = 계속적 사용**
일용직·파견직도 포함될 수 있음
- ✓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별도 적용

03 사업주·경영책임자의 4가지 의무 (법 제4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2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사고 발생 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3

행정기관 개선·시정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명령 사항 준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

※ 제1호와 제4호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

03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의무 (법 제5조)



원청은 수급인 종사자에게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단, 다음 경우에 한정

시설 · 장비 ·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04 처벌 — 사업주·경영책임자 (법 제6조)

제4조 · 제5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재해 발생 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부상자·질병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 2분의 1까지 가중

04 양벌규정 — 법인도 함께 처벌 (법 제7조)



법인·기관에 부과되는 벌금

50억원 이하

사망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그 외 경우

※ 법인·기관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

05 용어 정리 ① —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이 지정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가 지정 (현장소장)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안전보건 관리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지정 (조장·반장)

생산 관련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05 용어 정리 ② — 중대재해처벌법상 용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개념

경영책임자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표이사 · 총장 · 이사장 · 병원장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 · 공기업 대표 ·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과 그 근로자 등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6 위반 여부 판단 — 6단계 체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아래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처벌 가능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망·부상·질병)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

3

법 제4조 또는 제5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4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5

의무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

6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 현장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

06 판례 ① 식품공장 샌드위치 혼합기 사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3고단1983 | 식품 제조업 E 주식회사 (근로자 1,135명)

2022. 10. 15. 06:18경, 야간 근무 중이던 23세 여성 근로자가 혼합기 작업 중 사망

무엇이 문제였나?

- 최근 3년간 끼임 사고 12건 반복 발생
- 작업안전표준서 미작성
- 기본 안전수칙 스티커 미부착
- 덮개 열고 작업하는 관행 방치
- 연동장치(덮개 열림 시 자동정지) 미설치

판결 결과

A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 (공장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C (안전보건팀장)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D (안전관리자)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E 주식회사 (법인)

벌금 1억원

06 판례 ① 법적 쟁점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경영책임자 A의 위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의무 불이행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A · B · C · D 모두 유죄

작업안전표준서 미작성, 위험성평가 누락,
안전장치 미설치 → 사망과 상당인
과관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무죄

A의 안전조치위반치사

안전조치 미비를 인식·방치한 사실이 입
증되지 않아 무죄 → 법인 양벌규정도
무죄



같은 사고라도 법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각 법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06 판례 ② · ③ 농업 현장 유사 사고

판례 ② 버섯 배지 생산 회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2021고단729

2021. 3. 6. 배합기 내부 청소 중 근로자 B가 실수로 작동버튼을 눌러, 회전날개와 벽면 사이에 협착 → 사망

쟁점 — 운전 정지·잠금장치 미설치 등 6가지 안전조치 미이행 + 공동과실

판결

A (경영자): 금고 10월 + 벌금 500만원

B (근로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C 법인: 벌금 1,000만원

판례 ③ 김치절임식품 제조 공장

청주지법 영동지원 2015고단107

2015. 3. 19. 덮개 없는 양념혼합기에 근로자 D가 손을 넣어 작업 중, 회전축·날개에 끼어 압박·질식으로 사망

쟁점 — 회전기계에 덮개 미설치 → 안전조치의무 위반

판결

A (실운영자): 징역 4월 (집유 2년)

B 법인: 벌금 500만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이전 사건

06 판례 ④ · ⑤ · ⑥ 농업 현장 유사 사고

판례 ④ 토마토 재배 농업회사법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1고단40

2020. 9. 3. 정비사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동력 개폐기를 작동시킨 과실로, 동력 개폐기와 시설하우스 철재봉 사이에 협착 → 사망

쟁점 — 동력 개폐기 사용 전 작업자 위치 미확인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판결

A (근로자): 징역 1년 6월(집유 2년)
B 법인: 벌금 1,000만원

판례 ⑤ 축산업 농업회사법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2023고단203

2022. 9. 14. 축사의 지붕 보수공사 작업 중 추락 → 사망

쟁점 — 보호구 미지급, 안전난간 미설치 등 →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결

A (경영자): 징역 8월 (집유 2년)
B 법인: 벌금 1,000만원

판례 ⑥ 축산업 농업회사법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5고단393

2014. 7. 5. 돈사 내 오수임시저장조의 수위를 측정하던 중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정신을 잃고 작업발판에서 추락 → 사망

쟁점 — 환풍기 설치, 작업현장 출입관리,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
+ 공동과실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결

A (경영자): 벌금 1,000만원
B (농장장): 벌금 1,000만원
C (오수과장): 벌금 1,000만원
D 법인: 무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이전 사건

세 판례에서 얻는 공통 교훈

01 회전체 · 혼합기는 공통 위험

식품·농업 현장의 반복 사고 원인. 덮개·연동장치·잠금장치 (LOTO)는 선택이 아닌 필수

02 관행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덮개를 열고 작업하는 관행 자체가 위법. 관리감독자가 이를 알고 방치했다면 과실 성립

03 작업안전표준서 · 위험성평가는 필수

서면화된 절차와 교육 기록이 없으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음

04 경영자 · 현장관리자 · 근로자 모두 책임

직책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업무상 과실치사가 각각 적용

C L O S I N G

오늘 배운 한 문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 ✓ 기억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대상
- ✓ 명심하세요 덮개 · 연동장치 · 잠금장치는 선택이 아닙니다
- ✓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곧 책임지는 현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